신안산대학교	평생교육원 규정	규 정 번 호	3-2-1
		제 정 일 자	1999.03.06
		개 정 일 자	2024.4.15.
		책임부서/팀·계	평생교육원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원은 신안산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(이하 “본원”)이라 칭한다.<2017.4.17. 개정>

제2조(설립목적)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본 원은 대학의 자원을 지역사회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누구나 언제나,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, 평생학습사회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. <2011.11.21 신설>

제4조(위치) 본원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신안산대학교 (캠퍼스) 내에 둔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. <2011.11.21. 개정> < 2017.4.17. 개정>

제5조(사업) 본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한다.

1.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성인교육의 실시 및 연구
2. 공개강좌의 개설, 봉사교육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실시
3. 평생교육 자료의 수집·개발 및 보급
4.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<2019.11.14. 개정>

제6조(평생교육사의 배치) 본원은 평생교육법 제26조1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<신설 2024.4.15.>

제7조(교육비 지원) 본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기 위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신안산대학교 직원에 한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24.4.15.>

제 2 장 조 직

제8조(원장)<조항변경 2024.4.15.> ① 본원은 원장을 두고, 필요한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, 원장과 부원장은 부교수이상 또는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조에 해당하는 교원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9.11.14.,2021.2.26.,2022.3.10.>

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9조(교직원)<조항변경 2024.4.15.> ① 본 원의 각 전공과정(반)에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

② 본 원의 운영상 겸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며, 필요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. 단, 겸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재임용할 수 있다.

③ 본원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. 단, 겸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재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1.14.>

④ 평생교육 교과과정(프로그램)의 개발과 운영, 평가·개선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전임교수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1.11.21.>

⑤ 본원은 운영전반에 대해 1인 이상의 명예원장을 둘 수 있다.

⑥ 본원은 운영전반에 대해 2인 이상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17.4.17.>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10조(구성)<조항변경 2024.4.15.>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원장 또는 부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 또는 부원장이 된다. <개정 2022.3.10.>

제11조(임기)<조항변경 2024.4.15.>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기능)<조항변경 2024.4.15.>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11.11.21.>
2. 사업계획과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<개정 2011.11.21.>
3. 교과과정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<개정 2011.11.21.>
4. 본 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재정에 관한 사항<개정 2011.11.21.>
5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13조(의결)<조항변경 2024.4.15.> 위원회는 본 위원회 구성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9.11.14.>

제 4 장 설치과정

제14조(학습기간)<조항변경 2024.4.15.>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.

제15조(학습일수)<조항변경 2024.4.15.> ①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특별과정의 수업기간 및 시간은 관련 관청이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원장이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1.21.,2019.11.14.>

제16조(지원자격)<조항변경 2024.4.15.>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 · 연령 등을 제한 할 수 있다.

제17조(선발방법)<조항변경 2024.4.15.> 본원의 학습자 선발은 각 모집단위별로 원서접수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1.21.>

제18조(폐강) <신설 2024.4.15.> ①각 과정별로 운영을 위한 최소 수강인원을 정하고 첫

수업시간의 인원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1주일 개강을 연기할 수 있으며, 이후에도 기준에 미달될 경우 해당 강좌를 폐강한다.
②최저수강인원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9조(학습비)<조항변경 2024.4.15.> ①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학습비의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중 수업료 등의 반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0조(수료 및 수료증 교부)<조항변경 2024.4.15.> 본원에서 소정의 설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1.21.>>

제 5 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

제21조(자치회)<조항변경 2024.4.15.>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원우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원우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1.11.21.>

제22조(학습자 활동의 금지)<조항변경 2024.4.15.>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집단행동· 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제23조(포상)<조항변경 2024.4.15.>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.

제 6 장 회 계

제24조(재정)<조항변경 2024.4.15.> 본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수강료 <개정 2011.11.21.>
2. 대학 보조금
3. 위탁훈련 지원금 (위탁훈련 시)
4. 기타 수입

제25조(감사)<조항변경 2024.4.15.> 본원의 감사는 본 대학 감사규정에 따른다.

제26조(회계)<조항변경 2024.4.15.> 본원의 회계는 학교비 회계로 하고 본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7조(사업계획 수립) <삭제 2011.5.1.>

제28조(예산편성)<조항변경 2024.4.15.> 본 원의 수강료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 <신설 2011.11.21.>

제29조 (회계집행) <2019.11.14. 삭제>

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하고 대학 사무처에서 수탁한다.

② 본원의 위원 및 명예원장·자문위원에게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1.21.,2017.4.17.>

제 7 장　시행규칙

제30조(시행규칙)<조항변경 2024.4.15.> 본원의 원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규칙 또는 운영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신설 2011.11.21.,2019.11.14.>

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안산공과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수강생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신안산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.
제3조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의 교명으로 수여된 수료증은 이 규정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.

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